

영등포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재진 의원 발의】



2019. 3. 2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89호로 2019년 3월 14일 김재진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나. 지역서점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 다. 영등포구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안 제7조 ~ 제10조)

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수당, 업무위탁,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 제15조)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2019년 기예산 반영 - 180,784천원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최근 인터넷 발달과 독자의 소비패턴 변화 등 도서구매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지역서점’의 정의를 영등포구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으로 규정함.
 - 안 제3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시책의 적극 발굴·추진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서점 창업 예정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서점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도서구매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에 대해 창업상담, 창업 후 운영 자금 지원, 마케팅 지원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서점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산하 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안 13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검토결과, 도서정가제 시행 등으로 도서 반값 할인 등과 유통 혼란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서점들은 가격경쟁력 상실 등으로 폐업이 증가하여 지역서점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따라서 가격경쟁력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 제정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독서문화 확산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 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지역서점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서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구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구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 문화 운동 전개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6.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